# KB스타 전세자금대출(갈아타기)(HUG\_주택도시보증공 사)



#### 대출자격
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'주택도시보 증공사(HUG)' 전세자금대출을 당행으로 전액 대환(차주 보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)신청하고, 공인중 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, 다음 각호 를 모두 충족하는 고객
  - (1)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 포함)
  - (2)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,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
  - (3) 주택도시보증공사의 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 「전세 자금대출특약보증」가입이 가능한 고객
  - (4)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 택\* 이내인 경우
  - \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. [※실수요 예외인정 없음]
  - (5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  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  - (6)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**(배우자** 소득합산 불가)
-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 외한다.
  - (1) 외국인 및 재외국민
  - (2) 당행 임직원
  - (3) CSS 10등급 이하인 자
  - (4)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/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
  - (5)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말소 이력(거주불 명등록)이 존재하는 자
  - (6)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전출 이력 이 있는 경우
  - (단, 최근 1년 이상 재직이 증빙되는 근로소득자 및 3년 이상 소득이 증빙되는 사업자는 예외)
  - (7)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 든 조건부 대출
  - (예: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  - (8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
  - (9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 (10) 대상목적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
  - (11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  - (12) 채권양도 "통지" 外 방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  - (13)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
  - (14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  - (15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
#### 대출한도

-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4억원(1주택 보유자는 최대 2억원) 이하로 아래 세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
  - ☞ 임차보증금액의 80% 이내
  - ☞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%
  - ☞ KB손해보험의 NICE 및 KCB 점수에 따른 인수기준
  - 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 능금액에 따름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 준용시에는 아래 요건을 추가적으로 따른다.
  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 - · 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(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함) ※ 대출잔액의 원금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고객 부담
  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 - · "Min(보증기관 보증한도, 기존대출잔액+보증금 증액 분)"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

#### 대출기간

- 대출기간: 7개월이상 25개월이내(☞ MOR 연동 24개월의 경우 최저 13개월 이상임)
- 대출만기일 :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
-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

전세자금대출 | 스타뱅킹신청

# 상품안내

#### 상품특징

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 「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」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

#### 대출신청자격
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'주택도시보증공사(HUG)' 전세자금대출을 당행으로 전액 대환(차주 보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)신청하고,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임차 인으로서,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고객
  - (1)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 포함)
  - (2)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,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
  - (3) 주택도시보증공사의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」과「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」가입이 가능한 고객
  - (4)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\* 이내인 경우
  - \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. [※ 사스오 예의의저 업요]

# 실수요 예외인정 없음]

- (5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- (6)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(배우자 소득합산 불가)
-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(1) 외국인 및 재외국민

- (2) 당행 임직원
- (3) CSS 10등급 이하인 자
- (4)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/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
- (5)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말소 이력(거주불명등록)이 존재하는 자
- (6)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
- (단, 최근 1년 이상 재직이 증빙되는 근로소득자 및 3년 이상 소득이 증빙되는 사업자는 예외)
- (7)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
- (예: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- (8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
- (9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- (10) 대상목적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
- (11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- (12) 채권양도 "통지" 外 방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- (13)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
- (14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- (15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
## 대출금액

-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4억원(1주택 보유자는 최대 2억원) 이하로 아래 세가지 금액 중
  작은 금액 이내
  - ☞ 임차보증금액의 80% 이내
  - ☞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%
  - ☞ KB손해보험의 NICE 및 KCB 점수에 따른 인수기준
  - 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 준용시에는 아래 요건을 추가적으로 따른다.
  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 - · 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(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함)
  - ※ 대출잔액의 원금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.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고객 부담
  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 - · "Min(보증기관 보증한도, 기존대출잔액+보증금 증액분)"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

####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\* 대출기간 : 7개월이상 25개월이내
  - (☞ MOR 연동 24개월의 경우 최저 13개월 이상임)
  - 대출만기일: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
  - \*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

### 대출대상주택

아파트(주상복합 포함)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주거용오피스텔(구분등기필수)로 하며, 기존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한 물건지여야 한다.
 [※ 단독, 다가구 미운영]

#### 대출신청시기

- \*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 - · 기존대출 잔여기간 7개월 +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
-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시
  - · 임대차 계약만료 30일 전부터 임대차 계약만료 15영업일 전(여신승인번호 생성일 기준)

● 대출실행: 영업일 오후 16:00이전

# 금리 및 이율

## 대출금리

- (1) 기준금리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잔액기준 COFIX」를 적용하며,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「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합니다. 신잔액기준 COFIX와 금융채금리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  - 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.
  - (3) 우대금리
  -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: 미운영
  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(연 0.2%p),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(연 0.3%p)
  - ※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,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.
  - 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·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 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## 조기상환수수료

-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5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최장 3년까지 부과)
  -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9%) 적용

## 전세금 반환보증

- 보증신청 기한
  - 신규 전세계약 :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이 경과 하기 전까지
  - 갱신 전세계약 :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까지
- \*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% 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
  - 보증한도=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(90%) 선순위채권
  - 보증한도 산식 : [선순위채권 + 전세보증금]은 주택가액이내
  - ※주택가액: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
  - · 단독, 다가구 주택 외 : 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≤ 주택가액의 60%〕
- 보증기간
  -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
- 보증조건
  -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  -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  -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
  -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등)
  -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(단독, 다가구의 경우 예외)
  -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- 보증료
  - 보증료: 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/365
  - 보증료율 : 아파트(연 0.128%), 아파트 이외(연 0.154%)
  - \* 주택의 LTV(선순위채권 +전세보증금)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

##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에 관한 사항

- 🍍 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
  -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\*)
  - \*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  - 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,0%p
  - 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    -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   -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  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 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   - :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- 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  - 상기 '② 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

▫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

## 이용안내

#### 담보

- \*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
- \*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

### 부대비용

- \*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| 대출금액 | 5천만원 이<br>하 | 5천만원 초과<br>~1억원 이하    | 1억원 초과<br>~10억원 이하     | 10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지세액 | 비과세         | 7만원<br>(각각 3만5천<br>원) | 15만원<br>(각각 7만5천<br>원) | 35만원<br>(각각 17만5천<br>원) |

- ② 보증료: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의 연 0.115% ~ 연 0.154% + 대출금의 연 0.031%(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)
- ③ 보험료: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- \*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보증료는 6개월 1년 단위(또는 일시납)로 고객이 부담(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가능)

● 대출 상환시,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

## 대출상환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
  - ※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  - 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
  - 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
  - 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  - 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
  - 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\* 휴일 대출 상환
  -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### 기한연장 관련 안내

- 만기일로부터 12영업일 전까지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.※단,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하다.
  - (1) 외국인/재외국민 차주
  - (2) 당행 수신계좌 미보유 차주
  - (3) 신용관리대상자 차주
  - (4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 의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
- 영업점에서 기한연장시에는 해당기준을 따른다.

#### 상품가입채널

- \* KB스타뱅킹
  - ※ KB스타뱅킹 접속경로: 뱅킹 > 상품가입 > 대출 > 대출 갈아타기 > 전월세 > 갈아탈 대출 조건 알아보기
- 대출신청시간: 영업일 09:00 ~ 21:50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- \* 대출신청기간
  - ·(일반) 기존대출 잔여기간 7개월 +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
  - ·(갱신) 임대차 계약만료 30일 전부터 임대차 계약만료 15영업일 전
- 대출실행 : 영업일 오후 16:00 이전

#### 대출계약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 영업점(콜센터 포함), 모바일 앱,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## 유의사항 및 기타

##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
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"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-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, 금융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6049-111호(2025.01.06)]

##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2025.01.13~2026.06.30

##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    | 변경후    | 기존고객<br>적용여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권리보험사<br>(2024.08.1<br>6) | 현대해상화재보험 | KB손해보험 | 기한연장<br>시 적용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| 변경후   | 기존고객<br>적용여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|
| 중도상환수수<br>료<br>(2025.01.1<br>3) | "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 (0.6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%) 적용" |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<br>환원금 × 수수료율(0.5<br>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<br>간(최장 3년까지 부과)<br>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<br>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<br>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<br>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<br>수료율(0.79%) 적용 | 미적용          |

## 필요서류

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(공인중개사 중개 필수)※ 갱신계약시 (신,구)계약서 모두 제출
-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
-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
- 임차목적물 건축물대장
- 주민등록표등본(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)
- 주민등록표초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,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)
- \*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
- 전입세대확인서

※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